최 신 판 례 예 규

Marketing Tax consulting

매출채권 염가 할인매입 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매출채권 팩토링업은 금융업의 일종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의

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하여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매 출채권 팩토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 치세가 면제된

사전법령부가-40, 2021,01,22

집 의

- 신청법인은 소프트웨어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으로 '20.8월 채권매입업을 업종 추가하여 매출 채권 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
- 매출채권 양도를 원하는 사업자(이하 "채권양 도자")가 팩토링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여 서비 스를 신청하면 신청법인이 신용평가 및 거래사 실 확인 후 할인율을 채권양도자에게 통보하고
- 채권양도자의 승인과 채무자의 동의에 따라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며 신청법인이 할인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채권양도자에게 지급함
- 채권양도자는 매출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매출채 권에 제반된 권리가 소멸하고 채무자는 거래약 정상 대금 상환일 이전까지 신청법인에게 대금 을 상환하여야 함

질의내용

비금융회사가 매출채권 팩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 는지 여부

▮회 신

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출채권을 할인매입 하여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매출채권 팩토링업을 영위하는 경우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

2018.12.31.까지 당초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2019.1.1. 이후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 을 하여 감면내용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 간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한 것임

기준법령국조-270, 2020,11,30

▮질 의

- 자문대상법인은 축전지 제조용 리튬화합물 및 관련 원재료의 제조·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임
- 자문대상법인은 '16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 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을 하였고 '16년 중 조세감면 결정을 통보 받았으며
- '17~'19년 3차례에 걸쳐 추가 투자를 실시하고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이에 따른 조세 감면내용 변경결정을 받았음
- 자문대상법인은 '19.11.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(3차)을 받고 이에 따른 법인세 추가감면을 적용하여 경정청구하였음(1차, 2차 변경결정에 대해서는 감면받았음)

질의

- '18.12.31. 전 조세특례제한법 § 121의2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감면을 신청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'19년 중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변경절정을 받은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
- * '19.1.1.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는 적용배제(조 세특례제한법 § 121의2②)

▮회 신

2018년 12월 31일까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 2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제6항 단서에 따라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을 받은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.

지점법인으로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관련법률 개정에 따라 독립법인으로 승격되어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는 경우 조직변경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

서면법인-2781, 2020,11,30

▮질 의

-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"AAAA연구원의 부설 기관(지점)"에서 독립법인인 "****에너지연구원 (본점)"으로 승격된 경우
 - 법인세법상 조직변경으로 보아 '법인세법, 제8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 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
■회 신

귀 질의와 같이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지점 법인으로 등록된 "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 가핵융합연구소"가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관 등의 설립、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에 따라 독립법인인 "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"으로 승 격되어 새로운 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 「법인세법」 제8조 제3항에 따른 '조직변정 전의 사업연도가 계 속되는 것'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. 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 종을 영위하는 통신판매업자를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 당 통신판매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의무발 행업종 사업자로서의 발급의무가 있음

서면전자세원-5881, 2021,01,04

▮질 의

• '21.1.1일부터 의무발행업종으로 확대 시행되는 " 애완동물 사료"를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로서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음

질의

• '21.1.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 부가통신사업자(오픈마켓)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
▮회 신

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통신판매업자를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통신판매업자에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서의 발급의무가 있음

- 다만.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 갈음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및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이 적용되지 않음

2021 · 07 · 28 www.eAnSe.com 13